

## 내부신고자보호에관한규정

제정 2021. 08. 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내부신고자”라 한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학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대학풍토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이익침해”란 학내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대학의 각종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나. 대학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이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1)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경우
    -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
2. “내부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자를 말한다.
  - 가. 피신고자인 대학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나. 피신고자인 대학 소속 연구소 또는 센터 등에 근무하거나 하였던 자
  - 다. 피신고자인 대학에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대학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 라. 피신고자인 대학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마. 그 밖에 대학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기관 등이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3. “신고등”이란 내부신고자와 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내부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과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3조(대학 등의 책무)** ① 대학은 대학의 이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내부신고자 등의 보호·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학은 대학의 이익침해행위의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신고 방법)** ① 신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부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대학의 이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대학의 이익침해행위 내용

4. 신고의 취지와 그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이 아닌 직접 구술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내부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내부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내부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처리)** ① 대학의 장은 내부신고자의 인적 사항, 대학의 이익침해행위 내용, 취지와 이유 등을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부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신고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내부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학의 장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를 중단할 수 있다.

1. 내부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내부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내부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 처리 결과를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내부신고자와 신고 대상자간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내용 등이 대학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6. 신고에 대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7.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관련 절차(재판, 수사 등 포함)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8.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음해, 허위사실 또는 비방성 내용 등 대학의 장이 조사를 진행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내부신고자 비밀보장)** ①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내부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언론에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내부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및 조치과정에서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내부신고자가 비밀이 보장되는 특정한 장소에서 상담 등을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부신고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조치)** 내부신고자등과 그 친족 등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대학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내부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내부신고자등의 징계권자는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내부신고자등에게 징계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 등의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내부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신고등을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내부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제9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내부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내부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신고등의 인사권자 또는 대학의 장은 내부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내부신고자 포상 등)** 대학의 장은 내부신고자의 신고내용 등을 조사한 후 그 기여도에 따라 포상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 방법 등은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내부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내부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8월 09일부터 시행한다.